

Tax Agent

사용방법

1. 질문 page 안내

pwc Tax Agent Powered by Samil

새 창 열기
Chat History

새 채팅 +

오늘
중소기업인 상장회사의 주... ...

Sidebar 접기/펴기

채팅 검색

사용 가능한 크레딧
9,988

356일 후 서비스가 일시 중지됩니다

young-in.park@pwc.com
PwC Dev team

법인 관리 페이지 →

과거 질의 내용 키워드 검색

잔여 크레딧

잔여 계약 기간

사용자 정보

법인관리자용 Page

궁금한 세무이슈, 지금 바로 물어보세요

질문이 구체적일수록 더 좋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용자 질의 입력

조세조약 OECD

Tax Agent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확인해 주세요.
Tax Agent는 세무 목적으로 설계되어 있어 회계와 관련된 답변을 제공해 드리지 않습니다.

조세조약(국가 선택 필요), OECD TP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인 경우 선택

2. 답변 Page 안내 (예판 검색 기준)

pwc Tax Agent Powered by Samil

새 채팅 +

오늘

- 내국법인인 회사가 해외 자...
- 2025 세계개편안에서 대주...
- 중소기업인 상장회사의 주...

채팅 검색

사용 가능한 크레딧 **9,986**

356일 후 서비스가 일시 중지됩니다

young-in.park@pwc.com
PwC Dev team

법인 관리 페이지 →

사용자 질문 사항

내국법인인 회사가 해외 자회사에 인력을 파견하고 관련 인건비를 전액 회사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세무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령, 예규,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의 파견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것이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해서 각각의 판단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이러한 판단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관련 예규 및 판례를 통해서 도출해서 알려주세요

1. 기본 법령 체계

- 손금에 포함될 수 있는 인건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함 **법인세법 제19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 해외현지법인 파견 인건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단서에 따라
 - 내국법인이 직접·간접 100% 출자한 해외현지법인
 - 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 한정)이 부담한 금액이 '내국법인+해외법인' 인건비 합계의 50% 미만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요건

이상을 모두 충족하고,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해 손금 산입 가능(**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인세법 집행기준 19-0-2,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3**).

2. 판단기준별 정리

구분	손금 인정	손금 불인정
① 업무 종사 실적	파견자가 사실상 내국법인 고유 업무 (기술·품질관리·현지시장조사 등)에 종사 (서면2팀-2108:20041018, 법인세과-318, 2013.06.28)	파견자가 현지법인 독자 업무 만 수행하거나 입증 불충분 (국일46017-334, 1997.05.12 , 법규과-1803-2:20051229)
② 지휘·감독 관계	파견근로자가 내국법인 지휘 아래 근무, 근로계약 평가·보고체계가 내국법인에 존재 (서면-2017-법인-2689, 2018.02.09)	인사권·고용·평가가 전부 현지법인에 있고 내국법인과 실질적 고용관계 단절 (대전지방법원2017구합 100948, 2017.11.19)
③ 인건비 부담	내국법인 부담액이 양 법인 합계의 50% 미만 (시행령 단서) → 부담 합리성 입증 (서면-2020-법인-2823).	내국법인 부담이 50% 이상이면서 파견근로자가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음 → 전액 불산입 (서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

검색된 참고자료를 검색 / 분류 필터링

생성된 답변에 사용된 참고자료 **※제목 클릭 시 원문 확인 가능**

생성된 답변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관련성이 높은 참고자료 **※제목 클릭 시 원문 확인 가능**

답변 내용
※하이퍼링크 클릭 시 원문 확인 가능

생성된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 (멀티턴)
※새 질의 시 "새 채팅"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3. 답변 Page 안내 (Prompt Enhancer 관련)

pwc Tax Agent Powered by Samil

새 채팅 +

예전 ^

- 아버지가 소유한 땅을 증여...
- 최근 현대자동차 관련된 기...
- 국가별 보고서 CBCR보고...
- 내국법인인 회사가 해외 자...
- 2025 세계계편안에서 대주...
- 중소기업인 상장회사의 주...

채팅 검색 Q

사용 가능한 크레딧 **980,888**

5537일 후 서비스가 일시 중지됩니다

young-in.park@pwc.com
삼일회계법인 Tax

법인 관리 페이지 →

중소기업인 상장회사의 주식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어떻게 되나요?

(1) 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각각 얼마인가요?
(2) 해당 주식을 소유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는 몇 명이며, 해당 대주주의 지분율은 각각 얼마인가요?
(4) 주식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중 어느 시장에 상장되어 있나요?
(5)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수는 전체 발행 주식 수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나요?
(6) 양도일이 언제인가요?
(7) 이전에 주식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력이 있나요?
(8) 중소기업으로 판정된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9) 추가로 곡계약에 따른 특별한 사항(예: 특수관계인 거래 등)이 있나요?

답변에 필요한 추가 질문을 AI가 생성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이 있는 경우	해당 문항에 대한 답변 기재 (예, 1. 취득가액 500만원, 2. 3년)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르는 경우	“모름” 혹은 “없음” 식으로 기재 가능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참조가 없습니다

4. 답변 Page 안내 (Web Search 기준)

pwc Tax Agent Powered by Samil

▼

새 채팅 +

오늘

2025 세제개편안에서 대주... ..

중소기업인 상장회사의 주... ..

채팅 검색 🔍

사용 가능한 크레딧 **9,987**

356일 후 서비스가 일시 중지됩니다

young-in.park@pwc.com
PwC Dev team

법인 관리 페이지 →

🔔 2025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대한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해주고, 해당 개정안의 관련한 정부, 정당, 기업의 주요 의견을 정리해줘

2025 년 세제개편안 - 대주주 범위(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개정안

- 기획재정부는 2025-07-31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단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 억원** → **10 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에 20~25 % 세율이 적용됩니다.
연합뉴스
- 그러나 개인투자자 반발과 자본시장 위축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2025-09-15 "현행 **50 억원**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수정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1 | 조세일보

이해관계자별 주요 의견·반응

이해관계자	핵심 입장·논거	근거
정부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개편안: 과세형평·세수 기반 확충을 위해 기준 10 억원 하향 9월 결정: 자본시장 활성화 요구를 반영해 50 억원 유지 	MOEF 보도자료 ☞ 기재부 뉴스1-조세일보 기사
정치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당 일각: "부자 감세 철회·과세형평 제고"라며 10 억원안 지지 야당 및 일부 여권 의원: 개인투자자 부담 가중·시장 충격 우려로 50 억원 유지 주장, 금융당국 책임론까지 제기 	블로그 '세제 개편안·정치권 대응' ☞ smile0923 '진성준 사퇴 요구' 분석글 ☞ mrfever
경제계·증권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사·경제단체: 대주주 범위 확대 시 연말 대량 매도 우려, 시장 유동성 감소 지적 50 억원 유지 결정에는 "시장불안 최소화"라며 환영 	뉴시안 분석기사 ☞ newsian 세계일보·조세일보 보도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

참조가 없습니다

사기 다변으로 피해 발생 시 피해 배상 시도는 사인회계법인이 코시저이 이점이 아니기에 오이십시기 바란 다.

인터넷 검색
결과 답변 내용
※하이퍼링크
클릭 시 원문
확인 가능

Thank you

© 2025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This proposal does not constitute a contract to perform services. Any engagement arising out of this proposal will be subject to the execution of our formal engagement contract, including our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and fees and billing rates established therein.

본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공식적으로 체결된 계약서 내용에 따릅니다.